

제 818 호
1981. 1.1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: 문화공보관 박 종 우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보

차 례

◎ 규 칙

제 1885 호: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..... 3

◎ 고 시

제 3 호: 정정 4

◎ 사 령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
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1980년 1월 10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885 호

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을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중 “사진” 다
음에 “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
소가 표시된 위치도면”을 삽입하
고,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
제 1 항 제 1 호(원색도안제외) 및
제 3 호의 구비서류외에 허가증 원
본을 첨부하여 기간 종료 7 일 이
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4 조에 제 4 항및 제 5 항을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④구청장은 광고물 제작업자가 법
또는 이 규칙에 위반되는 옥외
광고물등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등
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
소된 광고물 제작업자는 등록이 취
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가
아니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.

제 13 조 제 1 항중 별표 3, 별표 5, 별
표 6, 별표 8 의 표시위치난 제 1 호와
제 3 호, 별표 9, 별표 10 및 별표 11 의
허가여부 및 기간난의 “360 일”
“180 일” 및 “30 일”을 각각
“1년”, “6월” 및 “1월”로
한다.

제 1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제 15 조의 2 (심의위원회) ①구청에
광고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
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
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설치기준을 갱신하고자 할때
2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유가 있을때

③심의회는 광고물에 관한 사항에
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

④심의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위
원 9 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
건설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
무원과 사계권위자, 광고물 제작업자
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기간은 기존허가 만료 익일부터
기산한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
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당시
중전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
설치한 광고물의 기간은 허가된 기
간에 따른다.

③ (옥상광고물의 특례) 1980년
2월 4일 (광고물등 관리법 발효일)
현재 허가된 유효한 옥상광고물에
대하여는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
있으며 그 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
위 광고물중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
된 것은 이규칙 공포일로부터 60
일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되 그 허가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

정 정

시보 제 790 호 (80.7.14) 에 게재
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0 호
(80.7.14 중) 중 오류 사항을 다음
과 같이 정정함.

81. 1. 8.

서울특별시장

구 분

오

정

소	재	지	성동구군자동 205-1117
면		적	155 평
소	유	자	최 완 문
소	재	지	성동구군자동 205-800
면		적	374 평
소	유	자	최 완 문

성동구군자동 205-1117
155 평
최완문, 음상철
성동구군자동 205-800
374 평
최완문, 음상철

사 령

◎ 1981. 1. 4

마포구세무 2 과 이 현 규
지 방 행 정 서 기

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.

서울특별시장